
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7]
<신설 2025. 1. 3.>

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(제15조제3항 관련)

색채	색도기준	용도
빨간색	7.5R 4/14	금지
		안내
노란색	5Y 8.5/12	경고
파란색	2.5PB 4/10	지시
녹색	2.5G 4/10	안내
흰색	N9.5	다른 색채의 보조색
검은색	N0.5	

비고

- 색상, 명도 및 채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H(색상)는 ± 2 이내
 - V(명도)는 ± 0.3 이내
 - C(채도)는 ± 1 이내
- 위 표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(KS)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((KS A 0062)에 따른다.